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4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65-03-30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05번길	무단전출
박**	김** 1970-08-15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05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97-06-27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05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99-06-09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05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이 슬 문의전화 : 032-560-3329)

2015년 04월 16일

가좌3동장

